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 2025-014-046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재)한국인정지원센터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5. 6. 25.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55,200,000원

나. 과 태 료 : 6,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평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1)(이하'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재)한국인정지원센터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서 해커조직의 공격에 의한 해킹 사실을 전달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3. 1. 27.) 해 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2. 8. ~ '24. 2. 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3. 2. 17.(자료제출일) 기준, 21,349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¹⁾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 분	항목	기간	규모(명)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는 피심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SQL Injection 공격을 통해 탈취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구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를 유출하였다.(1차: '23. 1. 25., 2차: '23. 2. 18.)***

- * (IP주소) 118.140.35.47(홍콩), 23.81.44.93(일본), 110.45.210.183(한국)
- ** 통합자료실(), 인증기관 소식(), 안내()
- *** 해커는 현·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DB를 10개 파일로 분할하여 깃허브, 텔레그램에 공개 (피심인은 '20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DB를 현 홈페이지 회원정보 DB로 이관 후 구 DB 회원정보 미삭제)
 - 1) (유출 내용) 현·구 홈페이지 회원 21,234명의 개인정보
 -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구 홈페이지 수집 16,250건 포함, '01. 4. 3.~'14. 7. 8.) 등이 유출되었으며, 항목별 유출 규모는 상이함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 시		유출 인지 및 대응 내용	
(1차 인지 및 대응)			
'23. 01. 25		해외 해커조직이 깃허브에 한국인 개인정보 161건을 공개	
15:00 확인 요청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서 유출 개인정보 자료의 피심인 DB 자료 해당 여부 확인 요청	
17:00		피심인은 깃허브에 공개된 자료가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u>유출 인지</u>	
	14:23 개인정보 포털에 <u>유출 신고</u> (1차)		
'23. O1. 27.	15.20	유출 회원 대상 개인정보 <u>유출 통지(</u> 이메일, 문자)	
	15:30	※ 161명 대상 이메일 발송, 이메일 미수신자 문자 및 유선 연락	
'23. 01. 28 ~	09:30	피해 확산방지 조치(현 비밀번호 삭제, 정보주체가 신규 비밀번호 설정하도록 조치 등)	
(2차 인지 및 대응)			
'23. 02. 18.	16:16	해외 해커조직이 텔레그램에 회원정보 DB 9개를 추가 공개	

일 시	l	유출 인지 및 대응 내용
	17:22	텔레그램에 공개된 회원정보 DB 9개 파일이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u>유출 인지</u>
	18:20	피해 확산방지 조치(서버 차단)
'23. 02. 19.	19:08	유출 회원 대상 개인정보 <u>유출 통지(이메일, 문자)(2차)</u> ※ (2.19.) 이메일 발송 19,566건, (2.24.) 이메일 미수신자 대상 문자발송 7,052건
19:11		개인정보 포털에 <u>유출 신고(</u> 2차)
'23. O2. 20	12:00	개인정보 유출사실 안내 팝업 게시(홈페이지) ※ ('23.02.21.) 홈페이지 유출사실 안내 팝업 수정 게시(유출항목에 주민등록 번호 포함) ※ 홈페이지 개인정보 DB를 별도 서버로 이관(오프라인) 후 홈페이지 개설
'23. 02. 21.	08:19	유출항목(주민등록번호 포함 여부) 검토 결과 <u>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DB에 주민</u> 등록번호 포함 사실 인지
'23. 03. 10.	~ 09.26.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기존 홈페이지 폐쇄)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로그인 페이지에 대하여 입력값 검증 등 SQL Injection 관련 방어조치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01. 4월~'14. 7월 동안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16,250건을 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DB에 저장하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14. 8. 7.) 후 파기 유예기간(2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16. 8. 7.~'23. 2. 21. 동안 16,250건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법령의 근거없이 현·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DB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라.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현 홈페이지에서 '06. 10월~'23. 2월 동안 회원탈퇴한 192명 및 구 홈페이지에서 '06. 1월 ~'20. 1월 동안 회원 탈퇴한 49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6.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6. 25.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라한다)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하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로그인 페이지에 대하여 입력값 검증 등 SQL Injection 관련 방어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스템을 운영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²⁾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안전조치의무	舊 보호법	§30①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6②)
위반	§29	2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6③)

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피심인이 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01. 4월~'14. 7월 동안 수집한 주민등록 번호 16,250건을 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DB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주민등록번호	舊 보호법	§30①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암호화 의무 위반	§24③	3호			

다.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14. 8. 7.) 후 파기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16. 8. 7.~'23. 2. 21. 동안 16,250건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법령의 근거없이 현·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DB에 보관한 행위는 舊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 위반	舊 보호법 §24의2①	-	•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한 행위

라.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피심인이 현 홈페이지에서 '06. 10월~'23. 2월 동안 회원탈퇴한 192명 및 구홈페이지에서 '06. 1월~'20. 1월 동안 회원 탈퇴한 49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개인정보의 파기	舊 보호법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의무 위반	§21①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서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고유식별번호의처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별표 1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및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3)(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라 한다.)에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의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부실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의 중과실로 인해 16,250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서, 과징금 부과기준 2. 가. 기본 산정기준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천원으로 산정한다.

³⁾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10. 20. 시행

< 舊 시행령 [별표 1의3] 2. 가. 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나.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5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접근통제·접근권한 관리 조치를 현저히 부실하게 한 점,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0%인 천 원을 감액한다.

다. 2차 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2. 다.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6조에 따라 1차 조정액에 대한 가중·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라. 최종 조정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과징금 부담 능력이 낮고, 정보주체의 민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조정전 합의를 적극 이끌어 냈으며, 피심인이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2. 라.에 따라 2차 조정된 금액의 70%인 천원을 감액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별표 1의3]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최종 3	과징금 1	산출 나	역>
-------	-------	------	----

①기준금액	②1차 조정액	③2차 조정액	③최종 조정액	④최종 과징금
•중대한 위반행위 [*] (천원)	•1차 조정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에 따라 20% 감액 (천원)	•2차 조정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에 따라 조정비율 미적용	•과징금 부담능력, 경제적·비 경제적 이득 가능성 없음 등 고려: 70% 감액 (천원)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중대한 위반행위 : 중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처리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제4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4)(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24조의2제1항(주민 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고려사항)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접근통제·접근권한 관리 조치 부실,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미조치, ▲웹방화벽, 보안프로그램 운영 업데이트 미적용

^{*** (}고려사항) ▲위반기간: 6개월 초과, ▲2차 피해: 위반행위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 상당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 상당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지침(2023. 9. 15. 시행) 적용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단위: 만 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ਸਦਿਅਤ	<u> </u>	1회	2회	3회 이상
마. 법 제2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증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행위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 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민원에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조정전 합의를 적극 이끌어 낸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8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 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위반	600만 원	180만 원	480만 원	300만 원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	600만 원	180만 원	48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4.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5)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개인정보 보증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J	배인정보 보호법		가 행정처분한 내용		. — — .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순번	안사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 분일자	처분내용
		(재)한국인정지	舊 보호법*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미파기	2025. 6. 25.	과태료 부과 300만원
	1	원 센 터	舊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	2025. 6. 25.	과태료 부과 300만원

* 舊 보호법 : 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2025년 6월 25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V.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제3항,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제7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결과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6월 25일

위원	! 장	고 학수 (서	명)
부위-	원장	최 장 혁 (사	명)
위	원	김일환 (사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진환 (서	명)
위	원	김휘강 (서	명)
위	원	박상희 (사	명)

위 원 윤영미 (서명)

위 원 이문한 (서명)